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효 력 발 생 일	2023년 03월 31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	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

		- <문구 추가>	<p>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
--	--	---------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	- <u>재무상태표</u>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	<p>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</p> <p>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</p>	<p>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</p> <p>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</p>

		한 경우 :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 - <문구 추가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3.03.31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/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/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/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/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① (생략) ②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	가. 투자 대상 ① (현행과 동일) ②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

	<p><u>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③ <u>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⑧ <u>증권의 대여</u> <주석 추가></p> <p>⑨ <u>투자증권의 차입</u> <주석 추가></p> <p>⑩ <u>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: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신설></p> <p>나.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---<생략>--- 아닙니다.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	<p>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③ <u>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⑦ (현행과 동일)</p> <p>⑧ <u>증권의 대여</u> 주2) <u>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</p> <p>1. <u>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</p> <p>2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u></p> <p>⑨ <u>증권의 차입</u> 주3) <u>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u></p> <p>⑩ <u>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: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나.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---<생략>--- 아닙니다.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
--	--	--

		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 (이하 생략)---</u>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	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 (이하 생략)---</u></p> <p>③ ~ ⑧ (현행과 동일)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<위험 추가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'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'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20.6947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2.02.04</u>) (이하 생략)</p>	<p>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<u>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'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'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21.0520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3.02.04</u>)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<p>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 격 적용기준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매입 (1) ~ (2) (생략)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 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 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 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 (다) (생략) (4) ~ (5) (생략) 나. 환매 (1) (생략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2영업 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 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 니다.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 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 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 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 니다. (3) ~ (8) (생략) 다. (생략)</p>	<p>가. 매입 (1) ~ (2) (현행과 동일)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 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 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 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다) (현행과 동일) (4) ~ (5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(현행과 동일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영업일 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 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 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3) ~ (8) (현행과 동일) 다. (현행과 동일)</p>
<p>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 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 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 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 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</p>

		<p>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	<p>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p> <p>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1) ~ 2)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</p> <p>- <신설></p>	<p>1) ~ 2) (현행과 동일)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 <u>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 <p>- ※ <u>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(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을 포함합니다. 단,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- <u>예탁원결제보수, 채권평가보수, 부동산감정평가보수, 감사보수, 펀드평가보수, 지수사용료 등</u></p> <p>※ <u>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.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- <u>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,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,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, 현금 중개수수료, 대차 또는 대주, Repo 거래 중개수수료, 해외자산(주식, 채권, 선물, 장외파생,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) 등</u></p> <p>* <u>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, 금융비용 내역</u>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 <p>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<u>기준가격</u>으로 <u>당해 수익증권을</u>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기준 가격으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을</u>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		<p>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(생략)--- 나누어집니다.</p> <p>(1) ~ 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</u>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</u> 이내</p> <p>③ (생략) 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</p>	<p>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(생략)--- 나누어집니다.</p> <p>(1) ~ 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<삭제>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u> 이내. 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 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</p>
--	--	---	---

	<p>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 신설 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및 C-P2e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<u>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	<p>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및 C-P2e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 <삭제 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--	---	-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-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 정사항 반영	가. 요약재무정보 - <항목 추가>	가. 요약재무정보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>, <주식의 매매회전을>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집합투자재산 관 리회사에 관한 사 항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가. 회사의 개요 (1) (생략) (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 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 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 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 과 등 (이하 생략)	가. 회사의 개요 (1) (생략) (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 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 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 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 과 /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 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 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<생략>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 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<생략>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	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<생략>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 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 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<생략>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

		<p>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</p>	<p>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정기보고서 (1) (생략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</p>	<p>가. 정기보고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</p>

		<p>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~ (4) (생략)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10. (생략)</p> <p>(3) (생략)</p>	<p>계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~ (4)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</p> <p>1. ~ 7.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 <p>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10.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 <p>(3)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
--	--	---	---

<끝>.